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5 - 457호

의 안 명 「공상 직업군인을 위한 진료비 부담 정상화 방안」

대 상 기 관 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의결연월일 2015. 12. 21.

주 문

「공상 직업군인을 위한 진료비 부담 정상화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국군의무사령관), 보건복지부
장관(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12월 21일

위원장

위 원 김 인 수

위 원 곽 진 영

위 원 이 상 민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위 원 허 용 석

위 원 전 준 경

공상 직업 군인을 위한 진료비 부담 정상화 방안

2015. 12.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제도개선

☐☐ 목 차 ☐☐

I. 추진배경	1
II. 일반현황	2
III. 문제점 분석	6
1. 공상 직업군인 건강보험 보호 사각지대 방치	6
2.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사전심의 절차 복잡	12
3. 사전심의 흡결시 사후구제 수단 부재	14
IV. 제도개선 방안	17
1. 공상 직업군인 진료를 공무원 수준으로 보장	17
2.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운영 방식 개선	18
3.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사후 심의 절차 도입	19
V. 조치사항	20
붙임 : 관련 법령 등	21

I. 추진배경

-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폭발 사건 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한도 논란
-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치료에만 전념해 달라”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폭발로 다친 하재현, 김정원 하사 위문 방문 시 VIP 말씀, '15.9.6.)
- 국정과제 122. 군 복무여건 개선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고충국 협업)

□ 하사 이상 직업 군인이 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이하, '공상'이라함)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군병원 무료 진료**가 원칙

※ 민간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군병원에 설치된 '민간병원진료심의회'에서 사전 심의·승인을 얻어야 함

○ 군병원 진료가 불가능하여 민간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공무상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며, **국방부(군인연금급여심의회)**가 **지급 여부 결정**

□ 그러나,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 지원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상 직업군인에게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사전 심의를 이유로 제한

○ **공상 공무원(경찰, 소방관 포함)**은 민간병원 진료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직업군인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 배제**

○ 군병원 민간병원진료심의회는 공무상 부상자 발생시 군병원 진료 가능 여부를 수도병원에 문의 후 판단하는 등 운영 절차 복잡

○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진료비(건보공단 부담금)**가 **환수 조치**되며 **사후 심의제도 등 구제수단 흠결**

※ 건강보험공단은 상사 ○○○가 사전심의 없이 군의관 권유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공단부담금 환수를 통보함(국민신문고 민원)

□ 따라서, 공상 직업군인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가가 부담할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 **추진경과** : 착수(7월), 실태조사(7~9월), 관계기관 협의(10월)

II. 일반현황

□ 군 의료체계

- (개요) 국방부는 군인의 업무환경 위험성과 격리된 근무환경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군병원을 설립·운영

<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군병원 현황(14개) >

지역(개수)	군병원명
서울(1)	국군서울지구병원
경기(5)	국군수도병원, 국군고양병원, 국군양주병원, 국군일동병원, 국군청평병원
강원(4)	국군홍천병원, 국군강릉병원, 국군원주병원, 국군춘천병원
충청(1)	국군대전병원
전라(1)	국군함평병원
영남(2)	국군부산병원, 국군대구병원

기타 : 해군포항병원, 해군해양의료원, 공군항공우주의료원,

- (특징) 직업 군인은 업무 중 재해를 당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군병원에서 무료로 진료해 주는 것이 원칙, 단 개인적으로 입은 질병(부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됨

※ 군인은 열악한 근무여건과 긴장된 환경 등으로 인해 공무원, 기업 근로자보다 재해발생률이 1.9배~2.3배 높음(국방연구원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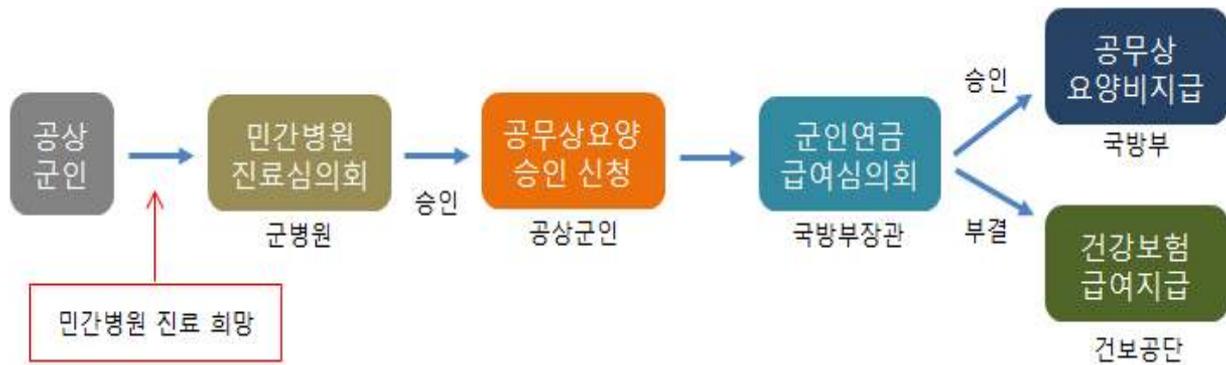
□ 공상 직업군인 의료지원

- (개념) 공상(公傷)이란 군인이 공무(公務) 수행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생기는 것을 말함

<사례> 훈련 중 부상, 초소 근무 중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상, 소속 상관 통제하의 행사 중 발생한 부상 등(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 (절차) 군병원에서 치료를 원하는 경우 무료이나, 민간병원 진료 희망시 군병원 진료가능여부 및 공무상 요양비 지급여부 사전심의

< 민간병원 진료사례 I: 사전심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



① 민간병원진료심의회

- 공상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 여부를 사전 심의하기 위해 설치

< 민간병원 진료심의회 >

- 근거 : 「공무상 요양비 업무 훈령」 제4조
- 설치 : 군병원장(수도병원 등 전국 14개)
- 기능 : 공무상요양 신청인의 질병 및 부상 상태에 대하여 군 병원의 진료능력(수도병원 기준) 초과 여부 및 응급성 여부 심의
- 구성 : 위원 5인(군의원 3인 포함), 군의원 중 해당 전문의 1인 이상 포함

②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 (대상) 하사 이상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 (요건) 민간병원진료심의회에서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 여부 사전 심의 통과자, 단 응급환자는 민간 병원 응급조치 후 심의

③ 군인연금급여심의회

-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승인 후 공무상요양비 신청시 국방부장관은 군인연금급여심의회*를 거쳐 공무상 요양비 지급여부 결정

< 군인연금급여심의회 >

- 근거 : 「군인연금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위원은 의료 및 법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 포함)
- 회의 : 7인으로 구성하되, 의료 또는 법무 분야 외부 위촉위원 3인 이상 포함
- 개의/의결 : 5명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④ **공무상요양비 지급** :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승인시

- 민간병원 진료비 전액(입원, 외래 포함)을 국방부가 부담

※ 환자 부담금 환급(국방부→환자), 건보공단 부담금 환급(국방부→건보공단)

⑤ **국민건강보험급여 지급** : 군인연금급여심의회 부결시

-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환자부담금은 공상 군인 본인이 부담하고, 공단부담금은 건보공단이 부담

※ 국방부가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급여의 제한*** 사유("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 민간병원진료사례 II: 사전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① 국방부는 사전심의 흠결을 이유로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음
- ② 건강보험공단은 공상군인이 **실제 공무상요양비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법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공단부담금 환수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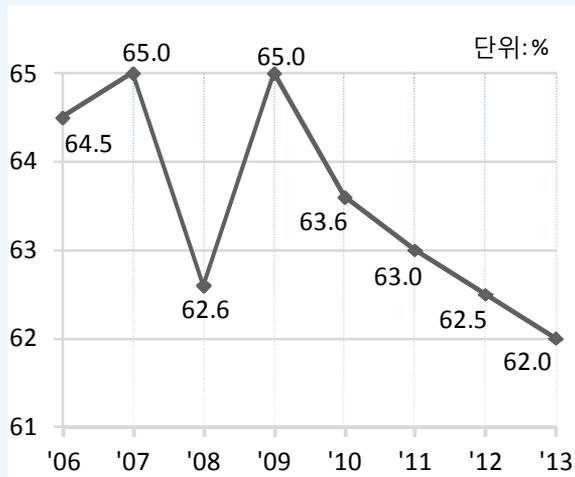
참고 : 국민 건강 보험 제도

- **(개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 진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것
 - ※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1999.2 제정)

- **(특성)**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이 강제되며, 소득수준 등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됨
 - ※ 총 51,878천명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으며,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등 직장가입자(69.6%)와 지역가입자(27.7%)로 구성('15.6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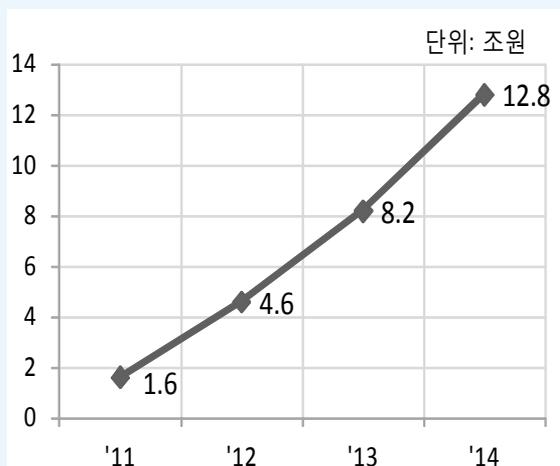
- **(통계)** 건강보험 보장률은 '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11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

<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



* **건강보험보장률** :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비율

<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



*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 재정 흑자 누적분

-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

Ⅲ. 문제점 분석

1. 공상 직업군인 건강보험 보호 사각지대 방지

가. 민간병원에서 진료받기 위해서는 사전 심의 필요

- 공상 직업군인이 민간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사전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함
- 비공상 직업군인, 공상 공무원(경찰·소방관 포함)에게는 없는 사전 심의를 오직 공상 직업군인에게만 요구

	공상 직업군인	비공상 직업군인	공무원	경찰.소방관
사전심의	○	×	×	×

* 현역병은 요양심사위원회에서 군병원 진료가능여부를 판단하나, 결과에 관계없이 민간병원 진료 선택 자유

- 공상 직업군인의 군병원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병원진료 사전심의제를 운영하여 보건의료접근권 제한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군인의 보건의료접근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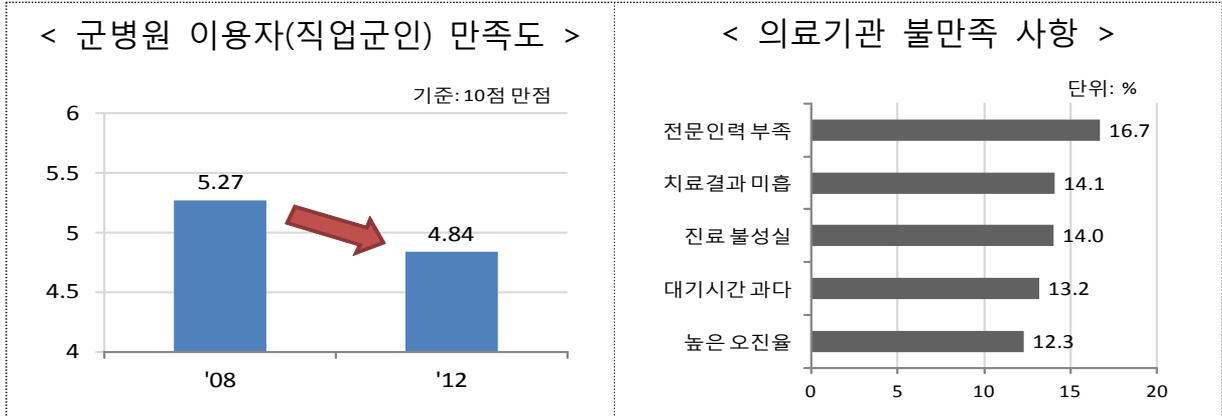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군보건의료"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 의료기관·군보건의료기관 또는 군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5조(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① 군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 ※ "총 맞고 지뢰 밟아도 수술 못하는 국군수도병원" (중앙일보 '15.9.17.)
 - 목함지뢰 사건으로 부상당한 하재현 하사를 치료할 특수외상 수술이 가능한 숙련의는 1명뿐이고, 재건 성형을 할 전문의는 아예 없어 민간병원 이송
 - 수도병원 의사 140여명 중 거의 대부분은 갓 전문의가 된 의무복무 군의관

※ **군병원 실태조사(만족도 및 불만족 사항)**



[제2차 군인복지실태조사(국방부, 2012)]

나. 사전심의 받지 않으면 공상 입어도 건강보험 적용대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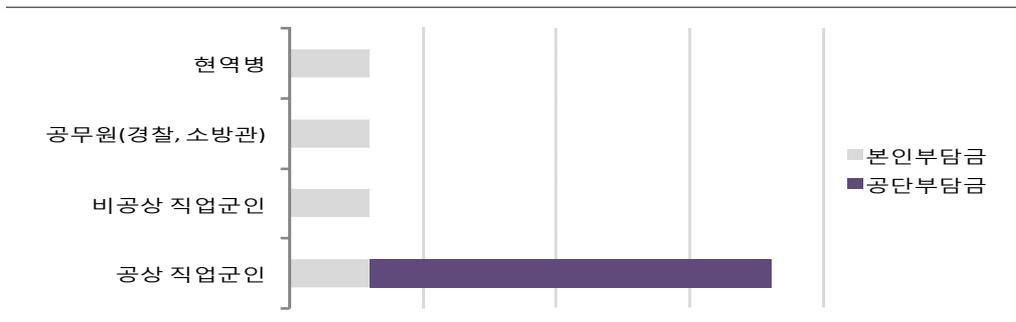
□ **공상 직업군인은 건강보험 납부해도 진료비 전액 자비 부담**

- 공상 직업군인은 사전심의 없이 민간병원 진료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 전액을 자비 부담
- 전보공단은 공상 직업군인이 군인연금법상 공무상요양비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중 급여에 해당된다고 간주하여 건강보험 미적용

□ **공상 직업군인을 비공상, 공무원, 현역병보다 불리하게 대우**

- 비공상 직업군인, 공무원, 현역병은 민간병원 진료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공상 직업군인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상황

< 예시 : 직종별 공상 환자의 민간병원 진료비용 비교 >



- **(비공상 직업군인)** 퇴근 이후 등 사적을 부상을 당한 경우(비공상) 민간병원을 이용하고 건강보험 지원(본인부담금만 납부)
 - ※ 직업군인 중에는 이를 악용하여 공상을 당했음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사적으로 부상을 당하였다고 거짓 진술하는 경우도 발생**
- **(공무원)** 공상여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 받으므로, 민간병원 진료시 건강보험 지원(본인부담금만 납부)
 - 만약, 공상으로 인정되어 공무상요양비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본인부담금까지 환급받을 수 있음
 - ※ 직업군인과 근무 환경 위험도가 유사한 **경찰, 소방관을 위해 경찰병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민간병원 진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공상 공무원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 >



* 공무상요양제도 및 요양비 지급기준(공무원연금공단)

☞ **사후정산 방식:** 공상 공무원이 민간병원 진료시 건보공단은 환자 본인 부담금을 지급한 후(④),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지급(⑥)

- **(현역병)** 군병원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본인 의사**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을 적용받음
 - ※ 단, 소속부대장은 현역병이 민간병원 진료를 원할 경우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은 자비로 지불**하여야 됨을 사전 서면고지하고 서명하도록 함

□ **직업군인, 공무원, 현역병 의료지원 체계 비교**

구 분	직업군인	공무원	현역병
대상	하사 이상	국가·지방직 공무원 경찰, 소방관 등	현역사병, 무관후보생
진료기관	군병원	민간병원 (의료법상 의료기관)	군병원
건강보험료	20% 경감	정상납부	면제
민간병원 진료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사전 승인 필수	제한없음	본인희망시 가능
민간병원 진료비용 부담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승인시: 국가 (국방부 또는 건보공단) ▪ 미승인시: 전액 자비 	전액 국가(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 또는 응급사안 : 국방부 ▪ 본인의사로 진료시: 본인 부담금 부담(건강보험 지원)
건보공단 부담금 환수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사전심의 흡결시	없음	없음
관련근거	군인연금법 공무상요양비 업무훈령	공무원연금법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 **근로자, 공무원,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 비교**

구 분	근로자	공무원	직업군인
부담주체	국가, 사업주	국가, 지자체	개인 (단,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사전 승인시 국방부 또는 건보공단)
재원	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	부담금 (국가, 지자체 예산)	개인 자비부담 (단, 사전승인시 국방부예산 또는 건강보험 지원)
관련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96조	공무원연금법 제65, 69조	군인연금법 제30조의 5

다. 본인 귀책사유가 없어도 진료비 부담을 환자에게 전가

□ **군의학관의 권유, 실무자 과실, 군병원 장비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진료비 전액 자비 부담**

○ **군의학관 권유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후 공단부담금 환수조치**

- 현역 중사 권○○은 2012년 공무상 부상(발목 골절)을 입어 국군수도병원 **군의학관 권유에 따라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민간병원 수술을 위해 부대 인사 실무자 지시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부대 인사실무자들의 과실(민간병원 진료심의 절차를 모름)로 민간병원 진료심의 절차를 안내받지 못하였는데 건보공단으로부터 1,300만원의 공단부담금 환수 통지를 받음 (권익위 민원)
- 중사 북○○은 2010년 8월 부대 내에서 축구경기 중 넘어져 군 병원에서 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군의학관이 구두로 상급병원(수도병원) 후송절차 문제로 수술이 지연될 수 있으니 외부병원의 진료를 받으라고 권유하여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전역 후 공단부담금 300만원 환수 통지를 받음 (국군의무사령부 민원)**
- 상사 김○○은 공상으로 발목골절을 당하였는데 민간병원진료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군의학관의 권유(진단서 발행)로 민간병원에서 진료 및 수술을 시행하였다**며 건보공단 부담금 환수통지를 받음 (국군의무사령부 민원)

○ **군 실무자 과실(미안내, 잘못 고지)로 민간병원진료 후 환수조치**

- 중사 이○○은 해군 특수전단 소속으로 흑한기 훈련 도중 안와골절 부상을 입어 국군강릉병원, 진해 해양의료원의 외래 진료를 거쳐 부산 백병원에서 2013.2.8. 안와벽 재건술(인공뼈 사용) 시술을 받았는데, **당사자가 본인부담금 외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음에도 2014.7월 건보공단이 공단부담금 130여 만원 환수를 통보함 (권익위 민원)**

○ **군 의료장비 문제로 민간병원 진료 후 환수조치**

- 민원인은 육군 대위(진)으로 훈련 중 부상을 당하였는데, **군병원(강릉병원) MRI 고장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공상임에도 민간병원 진료를 받았**다며, 건보공단이 공담부담금 140여 만원을 환수함 (국방부 민원)

라. 건강보험공단의 불합리한 공단부담금 환수

-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직업군인 중 직무 관련성(훈련, 운동 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임의적으로 추출하여 부당이득금 환수통보
- 건강보험공단은 공상 직업군인이 실제 공무상요양비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의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간주하여 공단부담금 환수조치

* **급여제한 사유:**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 등을 받게 되는 경우

• 훈련중 부상으로 완골 골절된 직업군인은 수도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고 있는데 군은 군 병원 진료 가능한 사안이라며 민간병원진료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어, 공단부담금(1,500만원)을 환수당할 우려 때문에 민간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을 참고 있음 (권익위 실태조사)

- 직업 군인은 향후 개인 인사상 문제, 조직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환수 통보액 납부를 강요받는 상황

※ 최근 5년간 환수통보를 받은 406명 중 **89.7%가 납부(부분납 포함)**하였으며, **최고 환수액은 약 1,530만원**, 1인당 **평균 환수액은 약 170만원**에 달함

< 공단부담금 환수조치 통보 현황 (상세내역 별첨) >

구분	군인(명)	환수 결정 금액(원)
총	406명	689,179,240
납부(부분납 포함)	364명	524,479,737
비율	89.7%	76.1%

(‘10 ~ ‘14, 권익위 실태조사)

가.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심의 및 환자 치료 지연

-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 여부를 수도권병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모든 사안에 대해 수도권병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
 - 군병원 진료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심의하지 못하고 수도권병원에서 받은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형태로 운영
- 공무상 부상 등을 당한 직업군인에 대해 신속하게 진료 가능여부를 판단하지 못해 환자 치료 지연 우려
 - 각 군병원에서 수도권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 골든 타임을 놓쳐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고 병세가 악화되는 상황 초래
- 또한, 민간병원진료심의회가 14개 군병원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심의가 수도권병원에 집중되어, 현장 중심의 신속한 판단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
 - ※ 실제 수도권병원을 포함한 전체 14개 군병원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심의 중 약 80%는 수도권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음(15.8. 권익위 실태조사)

나.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상정 안건 제한

- 군병원 및 수도권병원 군의관 소수의 판단에 의해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안건상정 여부가 사실상 결정
 - 군병원 군의관은 공상 환자 발생시 수도권병원에 진료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있는 경우만 안건으로 상정

※ 상정된 안건은 대부분 승인되므로 최근 5년('11~'15)간 군병원의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단 4건에 불과('15.8. 권익위 실태조사)

○ 법령상 근거없이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상정 안건을 제한함으로써 공상 군인의 심의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 초래

-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으면 민간병원 진료 후 공무상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차단

-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타 법령에 의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건강보험급여(공단부담금) 환수조치

<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사전심의를 받지 못한 경우 >



☞ 현행규정은 민간병원진료심의회가 심의한 사안만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 공무상요양비 지급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공무상요양비 업무훈령」)

3 사전심의 흡결시 사후 구제 수단 부재

가. 공상 직업군인은 불가피하게 민간병원 진료를 선택

- 대다수의 직업군인이 별도 안내를 받기 전까지는 민간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
- 또한, 사전에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장래 진급 및 보직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공무상 질병(부상) 사실을 숨기고 민간병원을 선택

나.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사전심사 누락자에 대한 구제수단 부재

- 공상 군인이 고의로 군병원 진료를 회피하는 등의 귀책사유 없이 사전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 심사 신청 불가
 - 이는 공상군인이 민간병원 진료 당시 군병원 치료가 가능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단부담금 환수조치는 부당
-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상이등급 판정의 경우 본인 귀책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시 사후 서면 신체검사 인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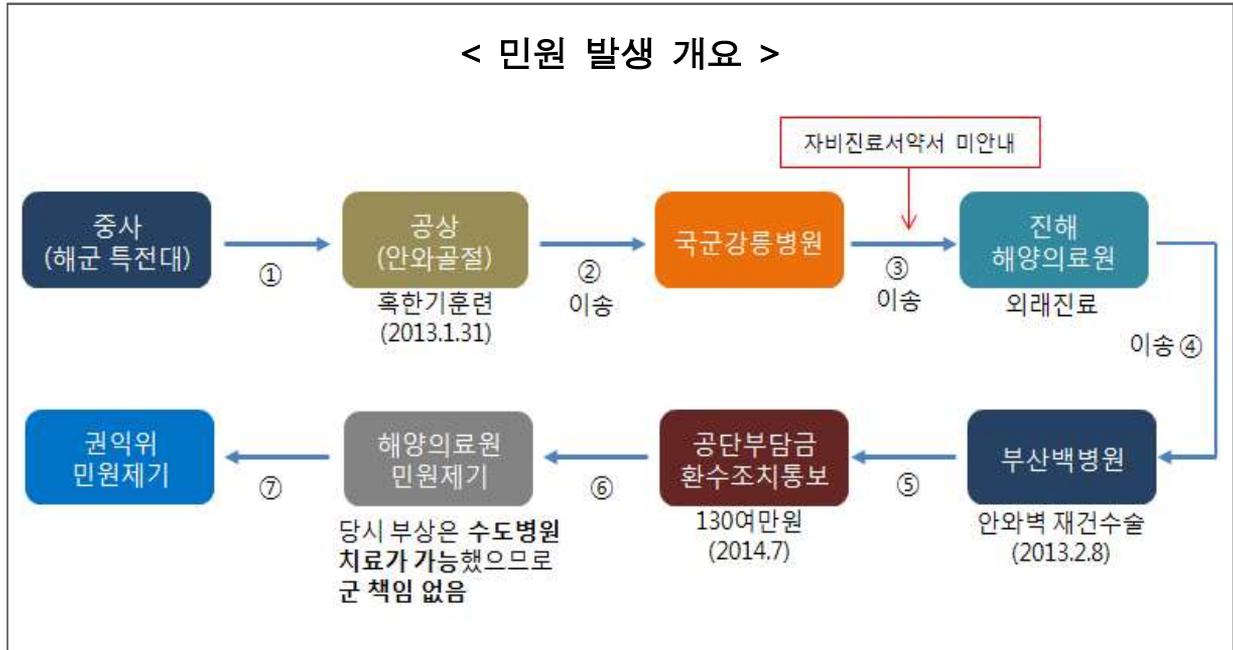
제13조(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법 제6조의3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 또는 법 제6조의5에 따라 상이가 추가로 인정된 자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 또한, 공상 직업군인이 민간병원 진료시 '본인 및 공단부담금 부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군인이 본인부담금 외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금전적 피해 발생

※ 외래진료 공상 군인이 본인 및 공단부담금 서약서를 안내 받지 못한 채 민간병원 진료를 받고, 1년 5개월 후 공단부담금 환수조치 통보를 받은 사례



다. 국방부는 근본적 대책마련 없이 소극적 절차 안내 수준

- 국방부는 직업군인들이 공무원보다 부당하게 차별을 받고 있고, 불이익 처우를 받고 있으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는 상황
- 군병원 품질 및 서비스 등으로 인해 진료를 기피하고 민간병원을 선택하는 공상 직업군인이 처한 상황을 외면

그동안 군병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지속되고 군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오진 및 의료사고 감소를 위해 실력 있는 의료진 확보와 더불어 민간병원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국회 군의료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13.4.15)

- 국방부는 사전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업군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고 절차를 준수하여 불이익 받지 않도록 안내하는 수준
- 국방부는 건보공단과 공상 군인에 대한 공단부담금 환수조치에 대한 해결방안을 협의하였으나 답보상태
- ※ 최근 국방부는 동 사안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논의**하고, 각 군병원에 '직업군인 공상환자 민간병원 이용시 공단부담금 환수관련 유의사항' 시달

< 직업군인 공상환자 민간병원 이용 관련 시달 ('15.7.23) >

- (근거) '15년 전반기 전군 주요의무지휘관 회의(6.30) 결과 하달
- (사유) 공무상 부상 등으로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치료 시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거 건강보험 공단에서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고 있으니 각 군병원은 유의사항 전파
- (강조사항)
 - 하사이상 간부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민간병원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병원진료심의회”에서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수도병원기준)여부 및 응급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를 거쳐야 함
 - 공단부담금 환수대상은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하거나, 군의관 구두 승낙 또는 권유(진단서 포함)만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여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환자)

IV. 제도개선 방안

1 공상 직업군인 진료를 공무원 수준으로 보장

□ 先심사 後치료에서 ‘先치료 後심사’ 방식으로 전환

- 공상 직업군인도 비공상 직업군인, 공무원(경찰, 소방관 포함) 및 현역병과 동일하게 민간병원 진료를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부여
 - 군 복무과정에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직업군인이 본인이 원하는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치료에만 전념해 달라”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하재헌, 김정원 하사 위문 시 VIP 말씀, '15.9.6.)

- 직업군인의 진료와 공무상요양비 지급을 위한 행정적 절차 분리

※ 공상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공무상요양비 승인여부에 따라 국방부와 건강보험공단 간 사후 정산 (공무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공무원연금공단과 건보공단 간 사후정산)

< 현행 규정 >

「군인연금법」

제30조의5(공무상요양비) ④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병원에서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정 예시 >

「공무원연금법」

제35조(공무상요양비)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절차 간소화 (단기 방안)

- 각 군병원은 공무상 부상자 발생시 수도병원에 문의하거나 후송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치료 가능 여부를 즉시 판단
 - 군 병원 치료 불가 판단시 지체없이 민간병원으로 후송
- 단, 각 군병원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심의 결과에 대해 직업군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수도병원에서 재심의하는 절차 마련

□ 직업군인에게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절차 안내 의무화 (단기 방안)

- 각 부대 인사담당자는 공상 군인이 병가를 얻어 민간병원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수도병원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함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규정
- 군의관의 민간병원 진료 권유, 인사담당자의 민간병원 진료절차 설명 누락 등으로 공상 군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예방
- 공상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및 공단부담금 부담서약서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 ※ 국군의무사령부는 공상 직업군인이 민간병원 이용시 ‘본인 및 공단부담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국방환자관리훈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건의(‘15.5.15)
- 공상 직업 군인이 민간병원 진료를 원하는 경우 사전 제약없이 반드시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안전 상정하도록 규정
 - 모든 안전을 상정·심의하여 추후 공무상요양비 신청 및 심의를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

□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 삭제 (중장기 방안)

- 공상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선택을 제약하는 민간병원진료심의회는 군병원 자체 경쟁력 확보 기간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폐지 검토

※ 관련규정: 공무상 요양비 업무 훈령 제3조, 제4조, 제9조

3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사후 심의 절차 도입 (단기 방안)

-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사전심의를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사후심의를 도입하여 **공무상요양비를 신청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갖출 수 있는 기회 부여**

* 정당한 사유 예시

- ① **군의관이 민간병원 진료를 승낙 또는 권유(진단서 발급)한 경우**
- ② **부대 인사담당자가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

- 공상 군인이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사후심사를 통해 **승인**(군병원 진료 불가판정)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부담금 환수 통보 철회**
 -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국가기관 간 진료비 부담 주체 결정**

※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승인 ⇒ 공무상요양비 지급(국방부는 진료비 전액 부담)
군인연금급여심의회 부결 ⇒ 건강보험 적용(건보공단은 공단부담금 부담)

V. 조치사항

- 권고 대상기관 : 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 관련법령 : 군인연금법 및 시행령, 공무상 요양비 업무 훈령 등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관계법령	조치기한
공상 직업군인 진료를 공무원 수준으로 보장	○공상 직업군인에게 민간병원 진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부여	국방부 / 복지부 국민건강 보험공단	군인연금법	'16. 12.
	○진료비는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 으로 국가기관* 간 사후정산 * 국방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병원 진료심의회 운영방식 개선	○각 군병원은 치료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 즉시 판단	국방부	공무상요양비 업무훈령	"
	○민간병원 진료를 원하는 공상 군인에게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사전심의 안내 의무화	"	"	"
	○민간병원 입원 및 외래 진료시 '본인 및 공단부담금 부담서약서' 작성 의무화	"	"	"
	○민간병원 진료를 원하는 사안은 모두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상정	"	"	"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 삭제	"	"	"
민간병원 진료심의회 사후 심의 절차 도입	○사전심의를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후심사 * 정당한 사유 별도 규정	"	"	"
	○민간병원진료심의회 사후심의 승인시 건강보험공단의 공단 부담금 환수통보 철회	국민건강 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규정	"

• **군인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公務)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시효)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다만,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및 공무상요양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④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3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해당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하되, 제23조에 따른 상이연금, 제2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및 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결정할 때에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공무상요양비의 급여 사유를 심의하는 경우에 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 인정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인연금급여심의회는 국방부에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5(공무상요양비) 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병원에서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의6(요양기관) 제30조의5에 따른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하여야 한다.

제30조의7(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요양기관이 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30조의8에 따라 산정한 공무상요양비를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30조의9(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① 군인이 긴급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제30조의5에 따른 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9조(시효의 연장)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2년간,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1년간 그 시효기간을 연장한다.

제22조(군인연금급여심의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의료 및 법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 또는 법무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급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급여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3명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급여심의회의 회의는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급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법 제23조 또는 제30조의5에 따른 공무상 질병·부상에의 해당 여부

제59조의3(공무상요양비 지급기준) 법 제3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병원에서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2.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제61조(공무상요양 승인) ① 군인이 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려는 경우 해당 군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치료기간이 명확하게 기록된 진단서

2.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요양기관에서의 치료를 승인한 의결서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위를 조사·확인한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2. 질병·부상경위조사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공무상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참모총장 및 제62조의2에 따라 공무상요양급여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신청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무상 요양비 업무 훈령**

제2조(신청대상) 하사 이상 직업군인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무상 질병·부상의 세부기준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준용한다.

제3조(지급요건) ①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 요건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하는 경우로 한다.

② 민간병원에서 요양하는 경우에 "민간병원진료심의회"에서 군병원의 진료능력 초과여부에 대하여 사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응급환자의 경우는 민간병원에서 응급 조치 후 지체 없이 응급성 여부에 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4조(민간병원진료심의회 설치·운영) ① 군병원장은 공무상요양 신청인의 상병상태에 대하여 군병원의 진료능력 초과 여부 및 응급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병원진료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의 "민간병원진료심의회"의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군의원 3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군의원 3인 중에는 당해 상병이 속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 여부는 수도병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6조(권리의 소멸시효) 공무상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므로 민간병원에서 요양 후 3년 이내에 군병원장에게 공무상요양승인 신청해야한다.

제7조(지급범위)

1. 진단
2. 약제·치료재 및 보철구의 교부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병원 또는 요양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제9조(요양승인 신청절차) 요양승인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 : 공상군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민간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 및 건강진단카드 사본 또는 체격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군병원장에게 제출한다.
2. 군병원장 : 신청서를 제출 받은 군병원장은 상병경위조사서·상병경위서·공무상재해 입증자료를 소속부대장에게 제출 요청하여 첨부하고 민간병원진료승인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각군참모총장에게 송부한다.
3. 각군참모총장 : 신청서를 제출 받은 각군참모총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질병·부상의 경위를 조사·확인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송부한다.
4. 국방부장관 : 국방부장관은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무상요양 승인 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각군참모총장, 요양기관,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2조2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요양급여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

제10조(군병원 신청 서류)

1.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건강진단카드 사본 또는 체격검사보고서 1부
3. 상병/폐질/사망 경위조사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4. 민간병원 진단서(치료기간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1부

5. 상병경위서 1부(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술)
6. 민간병원 진료승인 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7. 공무상재해 입증 자료(인사명령, 작전일지 및 작업지시서 등) 사본 1부
8. 구상권 행사 관련 각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가해자가 있는 경우
9. 진료비계산서 사본 1부
10. 상급병실 사용, 간호비 등 승인신청서 1부 : 해당시

제12조(사후승인)

1. 건강보험 적용 요양비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에 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상자에게 자동지급 → 국방부에 청구

2. 산재보험 적용 요양비 및 특수요양비

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 공상자에게 지급 → 국방부에 청구

제13조(사전승인)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에 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 요양기관에 자동지급 → 국방부에 청구

•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2조(적용대상) ①본 훈령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및 무관후보생에게 적용한다.

② 군입대전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사람에게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요양기간) 민간요양기관 요양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환자
2. 10일 이내에 군병원(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을 포함한다)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
3.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환자

제4조(요양심사위원회) ① 민간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현역병 등에 대하여 군병원의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군병원에 요양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되 군의관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군의관 중에는 당해 질병 또는 부상이 속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병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민간요양기관 입원진료 승인 등) ① 외출, 외박, 휴가기간 중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소속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응급환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원 전에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후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의사의 소견과 입원 예정기간이 명시된 민간요양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승인한 소속부대의 장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당해 현역병 등의 진료기간이 10일까지는 청원휴가를 허가하고, 진료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현역병 등의 소속부대를 지원하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한다.

1. 민간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의무기록사본 등

④ 군병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입원 의뢰된 현역병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병원의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군병원에서 진료 가능한 경우는 즉시 군병원으로 이송한다.

제6조(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의 허가) ① 소속부대의 장(군 병원장을 포함한다.)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에서 입원·외래 및 검사 등 「군인복무규율」 제39조의4 제1항 제1호 따라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군병원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5호의2 서식에 따라 발행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제1항에 따른 청원휴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되,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소속부대의 장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허가를 얻고 민간의료기관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자비로 지불하여야 됨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서명하도록 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제26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신청(제35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제51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제61조에 따른 유족보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순직공무원의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이하 "순직유족급여"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공무상요양비)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제37조(요양기관)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

제38조(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요양기관이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라 산정한 공무상요양비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65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제56조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제61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과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공무에 따른 질병·부상·장애 또는 사망 및 순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공단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제69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42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제56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제61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월 말, 4월 말, 7월 말, 10월 말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연금부담금 등의 산정은 매기마다 그 첫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수예산이 증감된 경우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 등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 중에서 공단이 직접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미리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기말에 정산하여야 한다.

⑥ 연금부담금 등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낼 때에 가감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의 과납 또는 미납분을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낼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⑧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연금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보전금에 충당할 수 있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0조(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① 법 제26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급여심의회는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 중 연금 및 재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공단 상임이사
2.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 및 복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급여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되, 제2항에 따른 위촉 위원이 6명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심의)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법 제35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제29조(공무상요양비)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 발생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 (이하생략)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이하생략)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

답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③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에 따른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7.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의 출연

8. 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민간병원 진료승인 의결서

민간병원 진료승인 의결서							
(1) 소속		(2) 계급		(3) 군번		(4) 성명	
<input type="checkbox"/> 입원	<input type="checkbox"/> 외래	(5)진료과		(6)전공상 구분	<input type="checkbox"/> 전상 <input type="checkbox"/> 공상 <input type="checkbox"/> 비전공상		
(7) 의 퇴 사 유							
(8)진단명							
(9)민 간 병원명		(10)민간병원에서 실제 요양한 기간	입원 . . . ~ . . . (일간)	외래 . . . ~ . . . (일간)			
(11) 승인여부	<input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불승인	<input type="checkbox"/> 응급성 인정		<input type="checkbox"/> 군병원 치료가능			
		<input type="checkbox"/> 응급성 불인정		<input type="checkbox"/> 군병원 치료불가능			
		결정일	년 월 일				
(12) 심의회원	(13) 직책	(14) 계급	(15) 성명	(16) 의견	(17) 서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국군()병원							
병원장		계급 :		성명 :		(직인)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	...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접수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4일
요양 군인	(1)성 명		(2)주민등록번호	-
	(3)주 소	□□□-□□□		전화번호 () -
	(4)계급·호봉 (군 번)	()	(5)소속부대명	
요양 기관	(6)기관명			
	(7)주 소	□□□-□□□	□□□-□□□	
(8)요양기간 (계 일간)	입원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통원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9)상병명				
(10)상병연월일시		. . . :	(11)상병장소	
(12) 평소건강상태	<input type="checkbox"/>	1. 건강 2. 요주의 3. 지병	(13) 제 3 자 가해여부	<input type="checkbox"/>
				1. 가해자 있음 2. 가해자 없음
<p>군인연금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군 참모총장 귀하</p>				
<p>첨부서류 1. 민간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치료기간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p> <p>위 사실을 확인하여 송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군 참모총장 (직인)</p> <p style="text-align: right;">※전화번호 : () -</p> <p>국방부장관 귀하</p>				
<p>첨부서류 1. 군인건강진단카드 사본 1부</p> <p>2. 상병경위조사서 1부</p>				

<별첨> 건강보험공단의 공단부담금 환수조치 현황 (성명 가나다순)

(기간: '10~'14, 단위: 원)

연번	성명	결정일자	통보금액	납부금액	완납여부
	합계		689,179,240	524,479,737	
1	강OO	20100930	2,816,870	2,816,870	완납
2	강OO	20131230	20,590	20,590	완납
3	강OO	20140307	516,730	0	미납
4	강OO	20130220	2,265,620	2,265,620	완납
5	강OO	20100702	170,980	132,490	부분납
6	강OO	20120420	382,150	382,150	완납
7	고OO	20110810	5,248,250	5,248,250	완납
8	공OO	20100729	701,580	701,580	완납
9	곽OO	20140828	2,647,260	177,660	부분납
10	구OO	20100128	58,090	58,090	완납
11	국OO	20111208	573,460	573,460	완납
12	권OO	20141230	8,371,480	0	미납
13	권OO	20110927	37,560	0	미납
14	권OO	20140630	830,590	830,590	완납
15	권OO	20100702	103,490	103,490	완납
16	권OO	20130709	4,110,970	4,110,970	완납
17	권OO	20100312	10,100	10,100	완납
18	금OO	20130228	747,050	747,050	완납
19	금OO	20130205	1,891,260	1,891,260	완납
20	김OO	20120406	2,578,620	2,578,620	완납
21	김OO	20130805	4,101,120	0	미납
22	김OO	20111027	2,340,120	2,340,120	완납
23	김OO	20100225	2,542,080	2,542,080	완납
24	김OO	20111226	16,320	16,320	완납
25	김OO	20140117	42,860	42,860	완납
26	김OO	20100525	2,173,670	2,173,670	완납
27	김OO	20111109	195,240	195,240	완납
28	김OO	20120427	418,570	418,570	완납
29	김OO	20110822	2,708,640	2,708,640	완납
30	김OO	20110216	3,776,550	3,776,550	완납
31	김OO	20130925	1,249,720	1,103,340	부분납
32	김OO	20140522	1,601,460	1,601,460	완납
33	김OO	20110831	3,408,220	3,408,220	완납
34	김OO	20110117	923,660	923,660	완납
35	김OO	20120416	4,006,250	237,490	부분납
36	김OO	20130926	1,708,320	1,708,320	완납
37	김OO	20140225	2,367,780	2,367,780	완납

연번	성명	결정일자	통보금액	납부금액	완납여부
38	김OO	20140905	1,112,090	1,112,090	완납
39	김OO	20140122	1,004,740	1,004,740	완납
40	김OO	20100225	1,226,060	1,226,060	완납
41	김OO	20130409	1,043,880	1,043,880	완납
42	김OO	20111031	925,060	925,060	완납
43	김OO	20110427	2,974,370	2,974,370	완납
44	김OO	20110224	1,234,690	1,234,690	완납
45	김OO	20140930	2,439,730	0	미납
46	김OO	20140711	3,138,160	3,138,160	완납
47	김OO	20140915	1,464,660	439,860	부분납
48	김OO	20120629	1,730,340	1,730,340	완납
49	김OO	20120118	1,196,250	1,196,250	완납
50	김OO	20130521	2,243,320	0	미납
51	김OO	20140317	363,630	363,630	완납
52	김OO	20100113	360,100	360,100	완납
53	김OO	20140731	15,271,270	2,989,070	부분납
54	김OO	20140512	1,266,750	1,750	부분납
55	김OO	20131126	3,615,050	3,615,050	완납
56	김OO	20120320	487,750	487,750	완납
57	김OO	20141007	785,720	105,820	부분납
58	김OO	20110803	1,196,140	1,196,140	완납
59	김OO	20100429	3,324,170	3,324,170	완납
60	김OO	20140731	2,176,530	2,176,530	완납
61	김OO	20120709	2,463,740	0	미납
62	김OO	20110218	2,310,180	2,310,180	완납
63	김OO	20101028	1,838,990	1,838,990	완납
64	김OO	20120927	3,620,060	1,225,980	부분납
65	김OO	20110728	871,480	871,480	완납
66	김OO	20110311	1,072,290	1,072,290	완납
67	김OO	20140822	1,085,440	221,440	부분납
68	김OO	20120207	2,439,380	2,439,380	완납
69	김OO	20120725	3,479,420	3,479,420	완납
70	김OO	20100528	1,409,620	0	미납
71	김OO	20130213	1,230,700	1,230,700	완납
72	김OO	20100609	201,510	201,510	완납
73	김OO	20101220	866,000	866,000	완납
74	김OO	20100325	2,658,550	2,658,550	완납
75	김OO	20140311	899,970	0	미납
76	김OO	20111011	1,133,790	1,133,790	완납
77	김OO	20100326	2,770,900	2,770,900	완납
78	김OO	20121121	163,040	163,040	완납

연번	성명	결정일자	통보금액	납부금액	완납여부
79	김OO	20140916	1,669,840	393,240	부분납
80	김OO	20120821	4,272,310	4,272,310	완납
81	김OO	20131008	1,934,190	1,934,190	완납
82	김OO	20120927	1,909,680	1,909,680	완납
83	김OO	20101230	2,833,040	2,833,040	완납
84	김OO	20140530	1,654,060	482,760	부분납
85	김OO	20130205	1,644,120	1,644,120	완납
86	김OO	20140818	1,095,520	0	미납
87	김OO	20130222	2,273,040	2,273,040	완납
88	김OO	20110711	2,770,340	2,770,340	완납
89	김OO	20140717	1,261,900	1,194,850	부분납
90	김OO	20130823	992,900	992,900	완납
91	김OO	20131212	2,448,670	0	미납
92	김OO	20100330	61,990	61,990	완납
93	김OO	20130306	458,490	458,490	완납
94	김OO	20121206	3,410,410	3,410,410	완납
95	김OO	20120201	1,775,440	1,775,440	완납
96	김OO	20110706	1,040,150	1,040,150	완납
97	김OO	20130313	2,757,940	,645,780	부분납
98	김OO	20111226	1,228,750	526,657	부분납
99	김OO	20100125	13,930	13,930	완납
100	김OO	20101222	1,657,070	1,657,070	완납
101	김OO	20130821	1,169,760	0	미납
102	김OO	20130424	1,377,310	1,377,310	완납
103	김OO	20100609	49,430	49,430	완납
104	김OO	20100105	601,820	601,820	완납
105	김OO	20140730	416,380	0	미납
106	김OO	20120906	2,903,430	2,903,430	완납
107	김OO	20141114	3,747,710	375,410	부분납
108	김OO	20110804	1,948,440	1,948,440	완납
109	김OO	20111121	900,840	900,840	완납
110	김OO	20121025	2,814,090	2,814,090	완납
111	나OO	20120830	2,588,550	2,588,550	완납
112	나OO	20140819	1,146,190	0	부분납
113	남OO	20120724	967,420	967,420	완납
114	남OO	20100824	3,343,590	3,343,590	완납
115	남OO	20120118	760,000	760,000	완납
116	노OO	20130521	613,720	0	미납
117	류OO	20140612	1,939,150	1,939,150	완납
118	류OO	20140512	355,400	355,400	완납
119	류OO	20121011	2,963,750	604,670	부분납

연번	성명	결정일자	통보금액	납부금액	완납여부
120	류OO	20130411	1,352,820	1,352,820	완납
121	맹OO	20111027	1,394,200	1,394,200	완납
122	문OO	20120608	3,308,880	3,308,880	완납
123	문OO	20130227	,331,100	1,331,100	완납
124	문OO	20130403	9,390	9,390	완납
125	문OO	20110114	4,472,120	44,870	부분납
126	문OO	20111007	3,044,430	3,044,430	완납
127	민OO	20110928	1,922,400	1,422,400	부분납
128	민OO	20100708	1,548,130	1,548,130	완납
129	박OO	20121102	2,971,630	2,971,630	완납
130	박OO	20140108	741,960	741,960	완납
131	박OO	20120802	92,800	92,800	완납
132	박OO	20100319	953,990	953,990	완납
133	박OO	20100128	14,170	14,170	완납
134	박OO	20110719	3,324,860	3,324,860	완납
135	박OO	20110831	1,110,540	1,110,540	완납
136	박OO	20100809	4,098,990	4,098,990	완납
137	박OO	20110525	2,172,550	2,172,550	완납
138	박OO	20130330	1,785,220	1,785,220	완납
139	박OO	20100429	1,847,400	1,847,400	완납
140	박OO	20130926	1,462,680	1,451,700	부분납
141	박OO	20120125	3,890,950	3,890,950	완납
142	박OO	20121025	1,869,220	1,869,220	완납
143	박OO	20100104	4,174,070	4,174,070	완납
144	박OO	20140507	1,880,370	1,880,370	완납
145	박OO	20101028	256,190	20,890	부분납
146	박OO	20120628	217,200	217,200	완납
147	박OO	20110127	9,990	9,990	완납
148	박OO	20140609	533,280	0	미납
149	박OO	20131018	1,901,080	1,901,080	완납
150	박OO	20111031	1,840,210	1,840,210	완납
151	박OO	20130624	548,780	548,780	완납
152	박OO	20140519	822,310	82,510	부분납
153	박OO	20101222	758,020	758,020	완납
154	박OO	20121231	1,327,030	1,327,030	완납
155	박OO	20110127	7,950	7,950	완납
156	박OO	20140227	1,589,050	1,429,050	부분납
157	박OO	20111024	1,199,170	1,199,170	완납
158	박OO	20101012	1,800,900	1,800,900	완납
159	박OO	20100915	673,130	673,130	완납
160	박OO	20121102	635,880	635,880	완납

연번	성명	결정일자	통보금액	납부금액	완납여부
161	박OO	20121015	9,080	9,080	완납
162	박OO	20120208	1,349,100	1,349,100	완납
163	박OO	20141125	1,323,250	1,323,250	완납
164	박OO	20121012	3,329,350	3,329,350	완납
165	박OO	20120625	2,288,290	2,288,290	완납
166	방OO	20130205	58,540	58,540	완납
167	배OO	20110926	676,860	676,860	완납
168	배OO	20110824	1,771,080	1,771,080	완납
169	배OO	20130111	3,031,910	3,031,910	완납
170	배OO	20110923	,843,430	993,100	부분납
171	백OO	20140708	448,030	448,030	완납
172	백OO	20100331	644,340	644,340	완납
173	변OO	20141210	1,316,150	0	미납
174	복OO	20130626	3,489,590	3,489,590	완납
175	부OO	20110930	1,120,540	0	미납
176	사OO	20130402	2,989,090	2,989,090	완납
177	서OO	20110729	528,510	528,510	완납
178	서OO	20100208	6,170	6,170	완납
179	서OO	20140618	874,740		미납
180	서OO	20120613	1,371,390	1,371,390	완납
181	서OO	20110607	805,390	805,390	완납
182	서OO	20130520	622,280	311,480	부분납
183	성OO	20100528	131,770	131,770	완납
184	성OO	20131219	2,494,790	175,520	부분납
185	성OO	20111219	1,181,760	1,181,760	완납
186	손OO	20120510	3,951,750	0	미납
187	손OO	20100415	735,020	735,020	완납
188	손OO	20130718	2,271,370	2,271,370	완납
189	송OO	20130404	1,642,400	0	미납
190	송OO	20110809	657,480	657,480	완납
191	송OO	20120208	2,155,260	2,155,260	완납
192	송OO	20121210	4,032,760	4,032,760	완납
193	송OO	20140901	887,600	296,000	부분납
194	송OO	20141210	1,962,270	0	미납
195	송OO	20100408	1,623,490	1,623,490	완납
196	신OO	20111226	2,262,380	2,262,380	완납
197	신OO	20110609	2,029,160	2,029,160	완납
198	신OO	20140929	573,380	382,280	부분납
199	신OO	20120517	1,247,510	1,247,510	완납
200	신OO	20110830	338,430	338,430	완납
201	신OO	20110211	85,030	0	미납

연번	성명	결정일자	통보금액	납부금액	완납여부
202	신OO	20100826	3,932,750	3,932,750	완납
203	심OO	20120822	1,769,420	1,769,420	완납
204	심OO	20130627	3,823,180	0	미납
205	심OO	20140522	2,590,840	2,590,840	완납
206	안OO	20130814	3,145,250	3,145,250	완납
207	안OO	20120112	1,121,070	1,121,070	완납
208	안OO	20110207	603,970	603,970	완납
209	안OO	20100111	1,147,050	1,147,050	완납
210	안OO	20101222	561,240	561,240	완납
211	양OO	20100531	4,181,340	4,181,340	완납
212	양OO	20140717	1,344,740	433,620	부분납
213	양OO	20140127	2,972,580	2,972,580	완납
214	염OO	20110408	353,320	353,320	완납
215	오OO	20100428	747,450	747,450	완납
216	오OO	20130415	1,256,710	1,256,710	완납
217	오OO	20100531	1,751,430	1,751,430	완납
218	오OO	20141209	6,590	0	미납
219	오OO	20130429	2,250,400	2,250,400	완납
220	우OO	20131212	2,141,600	803,600	부분납
221	원OO	20111209	271,380	271,380	완납
222	유OO	20121112	51,150	51,150	완납
223	유OO	20101224	1,219,060	1,219,060	완납
224	유OO	20120507	1,855,430	,855,430	완납
225	유OO	20100809	1,283,640	1,283,640	완납
226	유OO	20110908	923,950	923,950	완납
227	윤OO	20140502	2,670,460	2,670,460	완납
228	윤OO	20100506	861,610	861,610	완납
229	윤OO	20130903	111,140	111,140	완납
230	윤OO	20130116	2,363,290	2,087,330	부분납
231	윤OO	20120309	563,900	563,900	완납
232	윤OO	20120709	3,336,540	3,336,540	완납
233	윤OO	20131211	771,030	771,030	완납
234	이OO	20131106	924,300	924,300	완납
235	이OO	20110824	765,030	765,030	완납
236	이OO	20110104	892,240	892,240	완납
237	이OO	20111103	578,460	578,460	완납
238	이OO	20120427	1,495,290	1,495,290	완납
239	이OO	20130221	2,364,390	2,364,390	완납
240	이OO	20140930	2,126,690	2,126,690	완납
241	이OO	20100223	2,187,620	112,220	부분납
242	이OO	20140507	2,916,800	450,000	부분납

연번	성명	결정일자	통보금액	납부금액	완납여부
243	이OO	20120831	934,440	0	미납
244	이OO	20100427	3,105,940	3,105,940	완납
245	이OO	20110125	2,787,870	129,150	부분납
246	이OO	20110512	2,478,300	2,478,300	완납
247	이OO	20130627	2,595,340	2,595,340	완납
248	이OO	20110426	2,723,260	2,723,260	완납
249	이OO	20140930	4,919,610	4,919,610	완납
250	이OO	20120223	4,149,070	4,149,070	완납
251	이OO	20131031	997,420	0	미납
252	이OO	20110131	1,888,010	1,888,010	완납
253	이OO	20110225	684,200	684,200	완납
254	이OO	20130830	2,633,220	658,620	부분납
255	이OO	20120925	3,135,630	3,135,630	완납
256	이OO	20140925	2,100,380	2,100,380	완납
257	이OO	20100310	575,420	575,420	완납
258	이OO	20141224	3,898,700	0	미납
259	이OO	20130322	1,819,910	1,819,910	완납
260	이OO	20120918	620,340	620,340	완납
261	이OO	20110415	1,584,640	1,584,640	완납
262	이OO	20121224	1,715,080	0	미납
263	이OO	20120823	1,560,770	1,560,770	완납
264	이OO	20111007	12,457,740	0	미납
265	이OO	20110629	680,400	680,400	완납
266	이OO	20100427	3,298,640	3,298,640	완납
267	이OO	20141110	27,190	27,190	완납
268	이OO	20100323	42,650	42,650	완납
269	이OO	20130927	4,790,400	0	미납
270	이OO	20100310	395,690	395,690	완납
271	이OO	20121108	2,584,280	2,584,280	완납
272	이OO	20111208	1,550,710	1,550,710	완납
273	이OO	20100929	115,610	115,610	완납
274	이OO	20120524	552,700	552,700	완납
275	이OO	20120810	1,019,490	1,019,490	완납
276	이OO	20130118	1,200,700	591,980	부분납
277	이OO	20100928	899,800	899,800	완납
278	이OO	20131017	2,164,280	9,290	부분납
279	이OO	20111103	1,266,550	1,266,550	완납
280	이OO	20121212	575,690	575,690	완납
281	이OO	20120625	3,395,580	337,660	부분납
282	이OO	20140825	1,606,460	482,260	부분납
283	이OO	20140731	3,580,970	3,580,970	완납

연번	성명	결정일자	통보금액	납부금액	완납여부
284	이OO	20120924	1,662,890	1,662,890	완납
285	이OO	20140709	2,334,800	2,334,800	완납
286	이OO	20100624	2,679,510	2,679,510	완납
287	이OO	20110822	8,950	8,950	완납
288	이OO	20111129	2,288,180	2,288,180	완납
289	이OO	20120330	3,178,440	0	미납
290	이OO	20111222	2,334,760	2,334,760	완납
291	이OO	20120906	911,830	0	미납
292	이OO	20100329	3,519,040	3,519,040	완납
293	이OO	20100330	24,140	24,140	완납
294	이OO	20130313	3,373,340	3,373,340	완납
295	임OO	20131010	66,400	0	미납
296	임OO	20120717	4,213,120	4,213,120	완납
297	임OO	20130510	2,134,480	2,134,480	완납
298	임OO	20141031	1,463,110	1,463,110	완납
299	장OO	20100928	621,370	621,370	완납
300	장OO	20100426	1,486,380	1,486,380	완납
301	장OO	20140311	1,040,880	0	미납
302	장OO	20140930	1,430,410	1,430,410	완납
303	장OO	20140530	775,370	775,370	완납
304	장OO	20140512	767,490	267,490	부분납
305	장OO	20100831	1,789,940	1,789,940	완납
306	장OO	20120206	671,020	671,020	완납
307	전OO	20100203	110,150	110,150	완납
308	전OO	20110623	712,200	712,200	완납
309	정OO	20130923	3,505,590	3,505,590	완납
310	정OO	20100615	7,458,190	7,458,190	완납
311	정OO	20140625	6,510	6,510	완납
312	정OO	20140217	550,020	550,020	완납
313	정OO	20111230	2,270,100	2,270,100	완납
314	정OO	20140327	4,109,610	0	미납
315	정OO	20131216	940,890	40,890	완납
316	정OO	20120928	2,795,890	2,795,890	완납
317	정OO	20140217	1,021,010	1,021,010	완납
318	정OO	20120326	1,835,840	1,835,840	완납
319	정OO	20120618	671,760	671,760	완납
320	정OO	20130926	11,500	11,500	완납
321	정OO	20100525	1,421,120	1,421,120	완납
322	정OO	20121130	1,693,450	1,693,450	완납
323	정OO	20140731	1,076,210	1,076,210	완납
324	정OO	20131211	82,710	82,710	완납

연번	성명	결정일자	통보금액	납부금액	완납여부
325	정OO	20100527	5,590	5,590	완납
326	정OO	20140710	922,080	0	미납
327	정OO	20111220	95,110	95,110	완납
328	조OO	20140811	789,400	789,400	완납
329	조OO	20111129	2,279,420	2,279,420	완납
330	조OO	20120228	690,390	690,390	완납
331	조OO	20100809	1,409,740	1,409,740	완납
332	조OO	20130417	2,132,910	1,866,510	부분납
333	조OO	20140818	694,190	694,190	완납
334	조OO	20100917	512,760	512,760	완납
335	주OO	20100609	7,770	7,770	완납
336	지OO	20131126	1,878,740	1,878,740	완납
337	진OO	20130423	467,790	467,790	완납
338	진OO	20130722	1,688,310	0	미납
339	진OO	20120523	922,900	922,900	완납
340	채OO	20120228	1,855,980	1,855,980	완납
341	채OO	20140305	208,140	208,140	완납
342	천OO	20121128	3,135,740	3,135,740	완납
343	최OO	20100825	2,935,890	2,935,890	완납
344	최OO	20110727	2,111,440	2,111,440	완납
345	최OO	20130821	2,531,030	2,531,030	완납
346	최OO	20121221	726,410	726,410	완납
347	최OO	20140220	1,883,170	1,883,170	완납
348	최OO	20101202	154,760	154,760	완납
349	최OO	20130419	665,320	665,320	완납
350	최OO	20140310	5,684,680	0	미납
351	최OO	20110429	2,800,520	2,800,520	완납
352	최OO	20110531	1,183,150	1,183,150	완납
353	최OO	20100331	3,136,850	3,136,850	완납
354	최OO	20131212	3,685,730	3,685,730	완납
355	최OO	20120131	3,331,170	3,331,170	완납
356	편OO	20100128	5,700	5,700	완납
357	하OO	20121017	1,749,380	1,749,380	완납
358	하OO	20110125	1,396,220	1,396,220	완납
359	하OO	20130121	1,038,370	1,038,370	완납
360	한OO	20140527	2,620,410	1,092,310	부분납
361	한OO	20120621	760,460	760,460	완납
362	한OO	20121231	1,989,050	0	미납
363	한OO	20110728	2,929,540	2,929,540	완납
364	한OO	20110831	2,124,670	2,124,670	완납
365	한OO	20130719	2,357,760	2,357,760	완납

연번	성명	결정일자	통보금액	납부금액	완납여부
366	허OO	20131022	407,940	407,940	완납
367	허OO	20100430	2,104,010	2,104,010	완납
368	허OO	20130121	1,019,900	1,019,900	완납
369	허OO	20100514	1,280,650	1,280,650	완납
370	허OO	20101201	17,980	17,980	완납
371	허OO	20140530	2,518,520	187,950	부분납
372	현OO	20110829	2,013,660	2,013,660	완납
373	현OO	20140627	556,620	556,620	완납
374	홍OO	20111129	815,600	815,600	완납
375	홍OO	20100915	1,391,940	1,391,940	완납
376	홍OO	20140410	1,173,020	1,173,020	완납
377	홍OO	20130713	1,654,760	1,654,760	완납
378	홍OO	20100119	1,783,970	0	미납
379	홍OO	20130227	1,761,500	1,761,500	완납
380	홍OO	20100226	2,126,920	2,126,920	완납
381	황OO	20140825	297,670	0	미납
382	황OO	20130228	2,147,720	2,147,720	완납
383	황OO	20100121	10,030	10,030	완납
384	황OO	20140320	2,002,010	2,002,010	완납
385	한OO	20100325	978,840	978,840	완납
386	이OO	20120727	360,700	360,700	완납
387	김OO	20101111	2,962,170	2,962,170	완납
388	장OO	20110918	541,590	541,590	완납
389	구OO	20130704	1,230,470	1,230,470	완납
390	노OO	20110209	1,025,760	1,025,760	완납
391	정OO	20100819	11,480	11,480	완납
392	남OO	20140204	776,010	776,010	완납
393	박OO	20140702	1,452,650	1,452,650	완납
394	양OO	20121011	1,295,620	1,295,620	완납
395	남OO	20100319	1,233,340	1,233,340	완납
396	김OO	20110617	3,005,980	3,005,980	완납
397	송OO	20120705	805,440	805,440	완납
398	김OO	20130703	39,530	9,530	완납
399	김OO	20100315	1,063,860	1,063,860	완납
400	조OO	20111123	941,640	0	미납
401	권OO	20110712	598,840	598,840	완납
402	윤OO	20141022	935,240	935,240	완납
403	김OO	20131127	592,180	592,180	완납
404	박OO	20130731	745,600	745,600	완납
405	정OO	20140317	842,730	842,730	완납
406	이OO	20110114	2,175,180	2,175,180	완납